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 금 액			
보험료납입 보조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특약보험가입금액*			
	이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제자리암	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금액의 50%"를 지급함)			
※ 1년 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특약보험가입금액:「"보험료납입보조대상계약"의 월보험료(다만, 추가납입보					
험료 제외, 할인전 보험료 기준)×2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보험료납입보조대상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					
당 대상계약이 변경된 경우 보험가입금액도 변경되며,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당시의 보험가입금액이 적용됨)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납입보조대상계약"이란 다음으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과 "각「보험료납입보조대상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가.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갱신형 주계약(전환형 계약 제외)
- 나.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계약에 부가된 갱신형 특약(이 특약 제외)

[갱신계약의 경우]

- 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유지중인 갱신형 주계약(전환형 계약 제외)
- 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유지중인 주계약에 부가된 갱신형 특약(이 특약 제외)
- 다만, 다음 '가'부터 '다'의 경우는 「보험료납입보조대상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2-8조(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가입금액이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료"에 연동되는 특약
- 나. 보험료납입보조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소멸되는 주계약 및 부가특약
- 다. 중도부가특약

부표2-2

갑상선암 분류표



별첨2 [표 8-4] 참조

부표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별첨2 [표 6-1] 참조

부표2-4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첨2 [표 7] 참조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제5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3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제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제7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제9조 특약의 소멸

제10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기타사항

제11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4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 대리청구인(이하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청구인은 제5조(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제6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3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제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① 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 4.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 본
 - 5.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대리청구인이 제6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1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통화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의 청구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성립

제8조 특약의 무효

제9조 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11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계약자의 해지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관 기타사항

제13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부표1] 재해분류표

※ "원화형" 및 "달러형"은 주계약의 기준통화를 따릅니다.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 자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

제2조의2 통화의 정의

보험종목	통화의 정의	
원화형	보험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그 단위는 '원'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달러형	보험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그 단위는 '달러'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예금보험에 따른 지급보장에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22121522000000171441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287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에서 지급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부표1>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은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에서 지급할 사망보험금의 50%이내에서 지급하며, 다른 계약을 합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3,000만원(달러형의 경우 30,000달러)을 최고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약에 따른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차후 남은 사망보험금 지급시 그 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에서 이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뚜렷한 사기의사 등에 의하여 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 이후 "주계약 및 사망 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더라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